

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기관 (단체)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	대행하려는 업무		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5조의9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(단체)명 대표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·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. 운영계획서
업무처리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,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